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남구, 울주군

내 용

울산광역시에서는 매년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이 반복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영농편의 제공 및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洩),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도(農道) 등 농로 포함),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 기반 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농업용수는 준공신고 후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 항상 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를 받는 등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 총 255개 중 115개 관정(53.7%)이 [표1]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미실시 현황”과 같이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 하였는데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표1]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미실시 현황(2017.12월 기준)

(단위 : %)

시군구	보유 관정수 (A)	정기 수질검사 현황 (2014.1월~2017.12월까지)			비고
		실시	미실시(B)	비율(B/A)	
합계	255	118	137	53.7	
중구	2	2	-	-	
남구	4	-	4	100.0	폐공예정관정(1개) 포함
동구	5	5	-	-	
북구	22	22	-	-	
울주군	222	89	133	59.9	폐공예정관정(21개) 포함

또한 구·군별 자료를 재확인 한 결과 [표2] “농업용 대형관정 부적합 및 사용불가 현황” 과 같이 수원고갈, 도로편입 및 아파트 건립 등 수혜면적 소멸로 사용불가 관정을 받은 관정(22개) 및 수질검사 결과 14개 필수검사 항목¹⁾ 중 염소이온, 질산성질소 항목에서 기준치보다 과다하게 검출되어 부적합 관정을

1) 수질검사 14개 필수항목(검사비용 : 109,400원) : 수소이온농도,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안, 페놀, 납,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받은 관정(4개)에 대해 현재까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2] 농업용 대형관정 부적합 및 사용불가 현황(2017.12월 기준)

구·군	보유 관정수	확인결과				준공년도별 사용불가 현황	비고
		부적합	사용불가		소계		
			폐공	수리			
합 계	226	4	22	-	26		
남 구	4	-	1	-	1	(2001년) 1	남부순환도로 편입
울주군	222	4	21	-	25	(1983년) 1, (1984년) 3 (1992년) 1, (1993년) 2 (1994년) 5, (1995년) 2 (1996년) 1, (1997년) 2 (2000년) 2, (2001년) 1 (2002년) 1	(부적합)염소이온, 질산성 질소 과다 검출 (폐공)도로편입, 수원 고갈 등 수혜면적 소멸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울주군수는

[시정] 정기 수질검사 기간이 경과한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사용불가 및 부적합 관정을 받은 관정은 폐공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